



3) 지정 유효기간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함
 - * 다만, 지정권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신규 제공기관의 지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정받은 유효기간의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로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받은 시·군·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지정여부를 결정 및 통지하도록 함
 - * 재지정 신청절차는 신규 제공기관 지정신청 절차와 동일함

다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기준

1) 시설규모 및 형태

- 제공기관은 이용자 2명당 16.5㎡ 이상의 활동공간을 전용으로 갖추어야 하며, 1인 추가시 6.6㎡씩 추가 공간 확보해야 함
 - ‘활동공간’이란 9시~18시 동안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전용공간을 의미함
 - 사무실, 심신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2) 시설위치

- 제공기관의 위치는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이동이 가능하도록 권장함

- 2층 이상에 위치한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3) 시설공간

- **(활동공간)**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함
 - 파티션 등 임시 가림막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활동공간 내부를 볼 수 있는 투명창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심신안정실)** 심각한 도전적 행동 발생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심신안정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심신안정실은 상부까지 막힌 고정된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함
 - 심신안정실은 타 사업의 프로그램실과 겸용 불가능
 - 심신안정실은 이용자의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여야 함
 - 바닥 및 벽면에는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를 권장함
 - 행동관찰을 위한 분리된 관찰실 혹은 투명창 설치를 권장함
 -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권장함

다감각 교구 활용

- 청각자극: 천정형 스피커 설치, 개인용 음향물품 등
- 시각자극: 외부 광원 차단을 위한 암막커튼, 천정형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실내조명 등
- 촉각자극: 촉각자극을 선호하는 이용자를 위한 마루형·벽면형 촉각 물품 등

- **(사무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사무 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
 - 통합돌봄서비스 계약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관하므로 해당 기관 종사자 외의 사람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기타 공간)** 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창고 등

4) 시설안전

-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노유자



시설)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추는 것. 이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함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번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함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함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반드시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cctv 설치의 목적과 촬영장소 등을 안내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함
 -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도 현저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금지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함



라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기준

1) 인력기준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장, 서비스 제공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자격요건

- 시설장(관리책임자)

-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 4)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 행정인력 및 제공인력

-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 통합돌봄 서비스 시설장과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함
 -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1 매칭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3)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특정 연령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자료 활용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로 확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단, 결격사유 조회 절차에 의한 조회가 어려운 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서식 39호] 대체 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단, 결격사유 조회 절차에 의한 조회가 어려운 기관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서식 39호] 대체 가능

마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1) 제공기관 정보관리

- (신규 지정) 제공기관 지정 후 지정정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송
 - 시·군·구 담당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신규 지정된 제공기관의 정보를 전송하며, 지역센터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정보를 게시
- (변경 지정)
 - 시·군·구 담당자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정보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송
 - 지역센터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관정보 수정

2) 중요사항의 변경지정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서식 33호]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
- 다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및 소재지(주소) 변경시